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조명
시설 설치 의무 신설〉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08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5. 9. 26.
3. 회부연월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자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명은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황임.

이에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생략) <u><신설></u>	제11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설치자는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u>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u>시설기준 및 기술기준</u>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기준</u>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의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함¹⁾.

[어린이놀이기구 주요 현황]

○ 어린이놀이기구법에서 정하는 장소* 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총 83,763개소(2025. 3. 31. 기준)

* 주택단지·도시공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학원·의료기관·식품접객업소·놀이제공영업소·대규모점포·아동복지시설·목욕장업소·도로휴게시설·주상복합·공공도서관·종교시설·박물관·하천·자연휴양림·야영장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산업부 소관)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놀이기구 13종 43개 유형의 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시소, 암벽오르기 등)

- (장소별) 주택단지 44,921개소(53.6%), 도시공원 12,125개소(14.5%), 유치원 7,353개소(8.8%), 어린이집 7,352개소(8.8%), 학교 6,876개소(8.2%) 등

(단위: 개소)

총계: 83,763 [지자체 소관: 69,386(82.8%), 교육청 소관: 14,377(17.2%)]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44,921	12,125	7,352	6,876
아동복지시설	식품접객업소	놀이제공영업소	유치원
404	1,319	1,682	7,353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상복합	도로휴게시설	학원
119	325	36	111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도서관	종교시설	박물관	유아교육진흥원
49	375	94	37
하천 / 자연휴양림	야영장 / 대규모점포	목욕장업소	의료기관
81 / 135	178 / 83	73	35

(자료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

			
< 그네 >	< 미끄럼틀(독립형) >	< 정글짐 >	< 공중놀이기구 >
			
< 흔들놀이기구(시소) >	< 흔들놀이기구(A형) >	< 오르는기구(평행봉) >	< 오르는기구(늑철) >
			
< 오르는기구(철봉) >	< 오르는기구(암벽) >	< 회전놀이기구 >	< 건너는 기구(구름다리) >
			
< 조합놀이대(일반형) >	< 조합놀이대(물이용형) >	< 스페이스네트 >	< 폐쇄형놀이기구(실내) >

(자료 : 행정안전부)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자에 대해서 해당 시설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73호)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 설치검사기준, 어린이놀이기구 정기시설검사기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진단기준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동 기준에는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한 이용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조명 시설에 관한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명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자로 하여금 조명 시설에 대해서도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명 시설에 관해 마련된 공통 표준의 존재와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한 입법 취지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마련한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KS A 3011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998)」은 공공시설, 상점, 옥외시설, 주택, 학교 등 일정한 유형의 장소에 설치되는 인공조명에 대한 조도기준의 표준을 정하고 있음³⁾.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KS A 3011 : 1998) 개요]

구 분	내 용
적용시설 범위	경기장, 공공시설, 공장, 교통, 병원, 사무실, 상점, 옥외시설, 주택, 학교
인용규격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KS A 3703 터널 조명 기준
규정 내용	조명요소로서의 조도, 소요 조도, 표준 조도 및 조도 범위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⁴⁾, 일정한 장소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열거하고 있고,

3)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을 의미하며, 21개 부문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있음.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해당 장소들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KS A 3011 : 1998)」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임⁵⁾.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조명 시설 관련 기준을 정한다면, 현행 조명 시설 관련 공통 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조도기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조도기준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치검사 시 안전검사기관이 해당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도기준이 마련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명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에 반영하고 안전검사 기관이 설치검사 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구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장소 중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특수학교, 학원, 종교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은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KS A 3011 : 1998)」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는 장소는 동 조도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개요]

구 분	내 용
근거	법 제12조제1항
정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
시행주체	안전검사기관
시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따라서, 조명 시설과 관련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조명 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이 확인할 사항으로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명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조명 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야간 시간대 안전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KSA 3011 : 1998)에서 시설별로 조도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기준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